의 안 번 호	제140호
의결 연월일	2022. 10. 18.

## 는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, 제안자 : 2022년 10월 6일, 논산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2년 10월 6일

다. 상 정 일 자 : 2022년 10월 18일,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 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)

가. 제안이유

○ 「주민투표법」이 개정됨에 따라,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원활한 주민투표권 행사를 위한 시의 책무(안 제2조)
- O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관련 내용 추가(안 제8조제1항, 제10조)
- 통·리·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 내용 추가(안 제8조제2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: 생략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생략

5. 토론 요지: 생략

6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